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목 차>

1.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2. 보육공간 시설기준
3.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4. 위법행위의 승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성 자	이름	서정남
	담당부서 (과)	투자관리회수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박용순		연락처	042-481-4487
	과장	전세희		이메일	seojn@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2.규제조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제2항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7.31 ~ 2020.8.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에게 자금 규모가 큰 벤처투자조합도 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input type="checkbox"/> 건전한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자간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내부 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할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신설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등록 창업기획자 ('20.5월 기준 249개사 등록)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여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투자의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간의 권익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자동입력)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p><신 설></p>	<p>②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p> <p>1.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p> <p>2.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소속직원 중에 선임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을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p> <p>3. 창업기획자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p>

현 행	제 정 안
	<p>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p> <p>4. 창업기획자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5. 창업기획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기획자에게 자금 규모가 큰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가능해짐에 따라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 건전한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자간의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내부 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이해상충 방지기준 미규정
	내용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
규제대안 1	대안명	이해상충 방지기준 신설
	내용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설정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준법감시인 지정, 내부통제 방법 및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사전 행정노력 불필요	- 이해상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없어 분쟁이 발생 될 가능성 높음
규제대안 1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분쟁 요소를 사전검토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 가능	-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 행정절차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엑셀러레이터협회 임직원	창업기획자 제도발전과 협회의 역할('18.4)	이견없음
창업기획자 업계	창업기획자 육성을 위한 의견 청취('19.2)	이견없음
관계기관, 전문가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 ('19.10)	이견없음
업계 간담회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20.1)	이견없음
관련부처 및 기타 이해관계자	행정예고 예정('20.7.31 ~ '20.8.10.)	

3. 규제목표

- 창업기획자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투자의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간의 권익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해당 규제는 창업기획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을 신설하여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창업기획자에 대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존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그 내용은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에 위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③ 법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창업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소속직원 중에 선임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을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3.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창업투자회사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창업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처분대상자인 창업기획자가 사전에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방법과 절차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자가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내부 직원 중에 1인 이상 지정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인력 소요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1) * 시행('20.8.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8월초 예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20.7.31~10)

2. 향후 평가계획

- 창업기획자 정기검사 등을 통해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창업기획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

3. 종합결론

- 창업기획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법감시인 1인 이상 및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창업기획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므로 규제 신설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육공간 시설기준		
	2.규제조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7.31 ~ 2020.8.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는 보육공간 위치 선정시 창업기획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설치하고 이에 등록기관은 보육가능 조건 확인 때 거리기준 없이 심사자에 따라 자의적 평가가 발생 <input type="checkbox"/> 정부는 창업기획자의 본사와 보육시설 거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보육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 본사와 보육 가능한 보육시설의 거리 기준에 대한 원칙과 예외사항 조건 마련 - 창업기획자 본사와 보육공간은 동일 광역시·도내 위치를 원칙, 다만, 전문인력 상주 등 보육에 문제가 없을 시 예외사항 인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등록 창업기획자 ('20.5월 기준 249개사 등록)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가 보육공간 마련시, 본사와의 거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보육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창업기업 지원이 가능한 환경 조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자동입력)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 금지규제 방식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영 제13조제 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보육공간의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기간(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p> <p>2. 본사와 보육공간의 위치는 동일 광역시·도내로 한다. 다만 근접한 시·도내에 위치하거나, 원거리 보육시설에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등 보육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① 추진배경

- 창업기획자 제도는 '16.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16.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0.5월말 기준, 249개사가 등록
-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투자와 보육을 전문으로 하여야 하나 본사와 보육시설에 대한 거리기준이 없어,
 - 보육공간 위치 선정시 창업기획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설치하고 이에 등록기관은 보육가능 조건 확인 때 거리기준 없이 심사자에 따라 자의적 평가가 발생 가능

*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본사와 보육시설이 있는 곳은 20개사

② 정부개입 필요성

- 정부는 창업기획자의 본사와 보육시설 거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보육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본사와 보육시설 위치기준 미규정
	내용	사업계획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증 발급
규제대안 1	대안명	본사와 보육시설 위치기준 규정
	내용	본사와 보육시설간 위치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준 설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 창업기획자의 판단에 따라 보육공간 위치를 자의적으로 설정 가능	- 창업기획자 등록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보육 가능거리 조건 확인시 기준이 없어 심사자에 따라 자의적 평가 발생
규제대안 1	- 창업기획자 본사와 보육시설 거리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초기창업자가 불편함 없이 원활한 보육을 받을 수 있음	- 거리기준에 원칙과 예외사항 등을 두어 창업기획자의 불편함 발생 가능

○ (규제대안의 내용) 본사와 보육 가능한 보육시설의 거리 기준을 동일 광역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다만, 타 광역시·도에 위치할 경우에도 초기창업자의 보육에 문제가 없을 경우*는 인정

* (사례 1) 서울특별시 강남에 본사가 위치, 보육시설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경우, 근거리(20km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인정

* (사례 2) 경기도 성남에 본사가 위치, 육성 중인 초기창업자가 자율주행 분야이고 제품개발 테스트를 위해 자율주행 특구단지인 세종에 보육시설이 위치할 경우, 전문인력을 보육공간에 상주시킨다면 인정

* (사례 3) 광주광역시에 본사가 위치, 초기창업자의 수도권 마케팅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은 서울 종로구에 설치할 경우, 전자기기 등 비대면 보육 인프라 환경 구축시 인정

○ 창업기획자 본사와 보육시설 거리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초기창업자가 불편함 없이 원활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엑셀러레이터협회 임직원	창업기획자 제도발전과 협회의 역할('18.4)	이건없음

창업기획자 업계	창업기획자 육성을 위한 의견 청취('19.2)	이건없음
관계기관, 전문가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 ('19.10)	이건없음
업계 간담회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20.1)	이건없음
관련부처 및 기타 이해관계자	행정예고 예정(2020.7.31 ~ 2020.8.10.)	

3. 규제목표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보육을 전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본사와 보육시설 거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보육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창업기획자에게 본사와 보육시설의 거리기준을 동일 광역시·도내에 위치 해야함을 제시함으로써 초기창업자가 원활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본사와 보육시설의 거리 기준을 동일 광역시·도내에 위치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타 광역시·도에 위치할 경우에도 초기창업자의 보육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허용함으로써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

* ① 본사와 보육시설이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경우, ② 전문인력이 보육시설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경우, ③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면 보육이 필요한 경우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국제기준	일몰설정	원칙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정합성	여부	예외금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창업기획자는 본사와 보육시설을 동일 광역시·도내에 위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다양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음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창업기획자는 본사와 보육시설을 동일 광역시·도내에 위치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은 별도의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2.11) * 시행('20.8.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20.8월초 예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 (2020.7.31 ~ 2020.8.10)

2. 향후 평가계획

- 동 고시의 제정 이후 창업기획자를 희망하는 법인의 규제완화 수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등록 창업기획자 대상으로도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을 청취

3. 종합결론

- 창업기획자는 본사와 보육시설을 동일 광역시·도내에 위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다양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기에 규제 신설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2.규제조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7.31 ~ 2020.8.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창업기획자 등록 취지에 어긋날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input type="checkbox"/> 건전한 초기투자 생태계 조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적격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해 처분사유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제할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처분별 양정기준 신설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등록 창업기획자 ('20.5월 기준 249개사 등록)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에 대한 처분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분대상자의 권익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자동입력)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 설>	<p>제10조(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p> <p>① 중소기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p> <p>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p> <p>나. 창업기획자가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와 거래하는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p> <p>다. 제2호의 업무의 일부 정지조치를 받고도 업무를 계속하거나, 제3호의 시정명령 또는 제4호의 경고를 2회 이상 부과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p> <p>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의 위법행위로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p> <p>2.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지원의 중단</p> <p>가. 창업기획자가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창업기획자 또는 이해관계</p>

현 행	제 정 안
	<p>인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p> <p>나. 제3호의 시정명령 또는 제4호의 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1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p> <p>다. 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시정명령 :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그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결과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명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p> <p>4. 경고 : 위법·부당행위로서 정상작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문책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p> <p>나.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창업기획자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창업기획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p> <p>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운영상황 보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p>

현 행	제 정 안
	<p>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소기업 부장관이 법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함으로써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p> <p>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상의 의 무를 태만히 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p> <p>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 의 사유가 있는 경우</p> <p>3. 경고</p> <p>가. 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 히 한 경우</p> <p>나. 중소기업부장관이 법에 의하 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 히 한 경우</p> <p>다. 법령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 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 한 경우</p> <p>라. 법에 의한 중소기업부의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마. 법에 의한 중소기업부의 행정 처분 또는 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p> <p>바. 기타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기획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창업기획자 등록 취지에 어긋날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
- 건전한 초기투자 생태계 조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부적격한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관리를 위해 처분사유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제할 필요

- 법 제36조에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 및 처분사유만을 규정하고 처분의 양정기준을 정하지 않아 처분대상자의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통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처분 결정

* (창업기획자 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경고, 지원 중단
(임직원 처분) 면직, 해임, 직무정지, 경고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해 제재적 처분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처분을 부과하여 안정적인 등록제도 운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처분별 양정기준 미규정
	내용	처분대상자의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종합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
규제대안 1	대안명	처분별 양성기준 신설
	내용	처분별로 양정기준을 토대로 처분의 수위를 결정

<참고> 처분별 양정기준

구 분	처분기준
창투사 등록 취소, 업무의 전부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 창업기획자가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와 거래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일부 정지조치를 받고도 업무를 계속하거나,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부과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처유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 창업기획자의 위법행위로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정지, 지원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획자가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창업기획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부과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1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 법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 경고의 사유에 해당하나, 그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결과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명령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고	- 위법·부당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규제대안의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소명 등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처분 가능	- 처분별 양정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상이할 수 있음
규제대안 1	- 처분대상자가 처분수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적극적인 의견 소명이 가능	- 처분별 양정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의 판단기준이 부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엑셀러레이터협회 임직원	창업기획자 제도발전과 협회의 역할('18.4)	이견없음
창업기획자 업계	창업기획자 육성을 위한 의견 청취('19.2)	이견없음
관계기관, 전문가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 ('19.10)	이견없음
업계 간담회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20.1)	이견없음
관련부처 및 기타 이해관계자	행정예고 예정(2020.7.31 ~ 2020.8.10.)	

3. 규제목표

- 창업기획자에 대한 처분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해당 규제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기획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최소한의 규제수단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국제기준	일몰설정	원칙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정합성	여부	예외금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존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에 위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검사·제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에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0호, 시행 2020.5.13.)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가. 삭제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6) 위법·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 (1) 당해 금융기관의 최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마. 삭 제

8. 삭 제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정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⑥ (생략)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처분대상자인 창업기획자가 처분의 수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창업기획자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므로 준수할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청이 처분대상자의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고시에서 정한 처분별 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 소요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1) * 시행('20.8.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8월초 예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 (2020.7.31 ~ 2020.8.10)

2. 향후 평가계획

- 창업기획자 정기검사 등을 통해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창업기획자의 행정처분 적정성 등을 조사·분석

3. 종합결론

- 처분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분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창업기획자)의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규제 신설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법행위의 승계		
	2.규제조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7조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7.31 ~ 2020.8.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행정처분 하도록 법에서 위임하였으나 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주의 변경 등을 하는 경우를 대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주주의 변경 등으로 창업기획자의 지배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위법사실은 승계 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부도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위법행위시 승계한다는 조항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등록 창업기획자 ('20.5월 기준 249개사 등록)		
규제의 적정성	9.규제목표	<input type="checkbox"/> 창업기획자가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주의 변경 등을 통해 지배 관계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위법사실은 변경 후에도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부도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자동입력)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17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기획자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의 창업기획자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 후의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기획자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행정처분 하도록 법에서 위임하였으나 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주의 변경 등을 하는 때를 대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주주의 변경 등으로 창업기획자의 지배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위법사실은 승계 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부도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행정처분 결과 미승계
	내용	주주의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미승계
규제대안 1	대안명	행정처분 결과 승계
	내용	주주의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승계

- 규제대안의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현행유지안	- 위법행위 발생시 주주의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변경하며 행정처분 받지 않음	-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주변경, 명칭 변경 등을 하여 법에 허점을 악용할 여지 발생
규제대안 1	-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주변경, 명칭 변경 등을 하는 법에 허점을 사전에 차단	- 위법행위를 승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법을 악용할 가능성 차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엑셀러레이터협회 임직원	창업기획자 제도발전과 협회의 역할('18.4)	이건없음
창업기획자 업계	창업기획자 육성을 위한 의견 청취('19.2)	이건없음
관계기관, 전문가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 ('19.10)	이건없음
업계 간담회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20.1)	이건없음
관련부처 및 기타 이해관계자	행정예고 예정(2020.7.31 ~ 2020.8.10.)	

3. 규제목표

- 창업기획자가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주의 변경 등을 통해 지배 관계를 변경한다고 하여도 위법사실은 변경 후에도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부도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해당 규제는 위법사실은 주주의 변경 등을 실시한 후에도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의 투명성 및 통일성을 제고 하는 사항으로 최소한의 규제수단에 해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창업기획자의 위법행위는 승계한다는 사항으로 존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므로 일몰설정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하위 법령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것으로 고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9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창업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창업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처분대상자인 창업기획자의 위법행위는 승계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알리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하

는 규제가 아니므로 준수할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청이 처분대상자인 창업기획자의 위법행위는 승계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알리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 소요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1) * 시행('20.8.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8월초 예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 (2020.7.31 ~ 2020.8.10)

2. 향후 평가계획

- 창업기획자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창업기획자가 위법행위 승계의 적정성 등을 조사·분석

3. 종합결론

- 처분대상자인 창업기획자의 위법행위는 주주의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승계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도록 알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규제 신설이 타당